

# 대법원

## 제 2 부

### 판결

사건 2025다211379 구상금등청구의소

원고, 상고인 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

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5인

피고, 피상고인 피고

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3. 12. 선고 2024나37710 판결

판결선고 2025. 12. 4.

### 주문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.

### 이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#### 1. 사안의 개요

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.

가. 원고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

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.

나. 원고는 2022. 1. 18. 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1 회사'라 한다)와 보증금액 190,000,000원(보증비율 95%), 보증기한 2023. 1. 18.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. 소외 1 회사는 2022. 1. 20. 위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주식회사 △△△(이하 '소외 2 은행'이라 한다)으로부터 200,000,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23. 1. 18.로 정하여 대출 받았다(이하 '이 사건 대출'이라 한다).

다. 소외 1 회사는 2022. 6. 25.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원심 판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채권양도'라 한다).

라. 소외 1 회사는 2023. 1. 18.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고, 소외 2 은행은 2023. 1. 25. 원고에게 대출원금 연체의 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.

마. 원고는 2023. 5. 31. 소외 1 회사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2 은행에 보증원금과 이자 합계 187,861,2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바.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## 2. 원심의 판단

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.

가.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고, 이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족을 확실히 보장하는 인적 담보에 해당한다.

나. 따라서 물적 담보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신

용보증책임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.

### 3. 대법원의 판단

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.

가.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,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, 오로지 주채무자 자신의 자력만이 문제된다(대법원 2007.

5. 31. 선고 2005다61195 판결 등 참조). 이는 인적 담보의 종류가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.

한편,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, 주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여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종래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, 채권이 이전된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(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다77146 판결 등 참조).

나.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.

1) 소외 2 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.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지만, 이는 인적 담보의 일종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외 2 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.

2)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외 2 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,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소외 2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함께 그 채권자취소권을 이전받았다고 보아야 한다.

따라서 원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고유의 구상권 범위에서 소외 2 은행이 행사할 수 있었던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다.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.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.

#### 4. 결론

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폐기하고,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재판장**      **대법관**      **권영준**

대법관 오경미

대법관 엄상필

주 심 대법관 박영재